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54

발의연월일: 2020. 11. 23.

발 의 자: 홍기원·강준현·고영인

기동민 · 김윤덕 · 김홍걸

박상혁 • 안규백 • 이광재

이장섭 · 임호선 · 장경태

조응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말소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60만대가 넘음.

이에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 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정정비사업자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 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늘려 자동차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함으로써 자동 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 능력 향상을 통한 정확한 자동차검사 시행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 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의무적으로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후 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문을 준용토록 함(안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 다.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 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

항).

- 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강화함(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 마.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검사 기술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의2 신설).
- 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81조 및 제84조).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2항 및 제37조 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수 있다"를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를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로,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등록원부"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5조의3제4항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 월"을 "1년"으로 한다.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내용·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2호 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37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4항에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5의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4.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81조 및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 또 는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후 경과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45조제5 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말소등록) ①・② (생	제13조(말소등록)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의2제2항</u> 에 따른 자동	3. <u>제24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u>			
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	<u>3</u> ক্ট			
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				
하는 경우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③ <u>시장·군수·구청장</u>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경</u>	아니한 지			
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경우 <u>시장・군수・구청장은 등</u>	한다시장·군수·구청			
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	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 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 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 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 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 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 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 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
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
른 이행 사항
<u>.</u>
제43조(자동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u> 利
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 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 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 ⑦ (생 략)
-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없다.
 - ⑥ ~ ⑧ (생 략)
-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
 -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 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

③
1. (현행과 같음)
2. <u>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u>
<u>사 또는 수리검사</u>
<u>등록원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5년</u>
<u>.</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 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 하 <u>제46조</u>에서 같다)으로 정한 다.

-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조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46조 및 제46조의2
세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 을 받은 날부터 <u>6개월</u>이 지나 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⑤ (생 략) <신 설>

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③
<u>1년</u>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
<u>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u>
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
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
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그 구
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
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
<u>아야 한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
육에 대한 기술인력의 이수 여
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
도록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1. (생략)
- 22. <u>제37조</u>(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22의2. (생략)

23. ~ 28. (생 략)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
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원교육의 대상·내용·
<u>방법·주기 및 실시 시기와 제</u>
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
정 기준・절차 및 지정해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ll81조(벌칙)
<u>.</u>
1. ~ 21. (현행과 같음)
1. ~ 21. (현행과 같음) 22. <u>제37조제1항</u>
22. <u>제37조제1항</u>
22. 제37조제1항
22. <u>제37조제1항</u> 22의2. 제37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22. 제37조제1항
22. 제37조제1항
22. 제37조제1항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의2. (생 략) <신 설>

<신 설>

16. ~ 24.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 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 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 9. (생략)

⑥ (생략)

제84조(과태료)	1	~	3	(현행과
같음)				

4 -----

•

1. ~ 15의2. (현행과 같음)
 15의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4.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 24. (현행과 같음)

⑤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의2.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